

## 환 경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제20.1조 및 제20.3조)

- ▣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규정
- ▣ 단,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는 인정

###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제20.2조 및 제20.10조)

- ▣ 양국은 양국이 모두 비준한 7개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해야 함.

#### 참고: 7개 다자간 환경협정

-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②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③ 해양오염 협약(MARPOL 73/78)
  - ④ 습지보존협약(람사협약)
  - ⑤ 국제포경규제협약(IWC)
  - ⑥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 ⑦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IATTC)
- ※ 동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 하에 추가 가능

- 단,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7개 다자간 환경협정과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 협정상 의무의 균형을 추구
- 한·미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과 무역협정간 상호 보완(mutual supportiveness)을 지속적으로 추구

### 환경법의 효과적 적용 및 집행 (제20.3조)

-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 환경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
- 양국간 투자·무역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수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환경법 적용 면제·이탈 금지

### 절차적 보장 (제20.4조)

-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은 국내법에 따라 환경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조사 요청 가능
- 당사국은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 동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
-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은 ① 손해 배상 소송 ② 구제명령 ③ 금전적 벌칙, 긴급폐쇄, 활동의 일시적 정지 등 제재 및 구제 청구 가능

## 환경협의회 설치 (제20.6조)

- 환경 챗터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설립 및 운영
  - 환경협의회 운영방식
    - 제1차 협의회는 협정 발효일 이후 1년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개최
    - 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등 환경 챗터 이행에 관하여 대중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Public Session) 개최
      - ※ 공개회의의 서면 요약 공개
    - 협의회 의제 개발시 대중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대중참여 증진 모색
    -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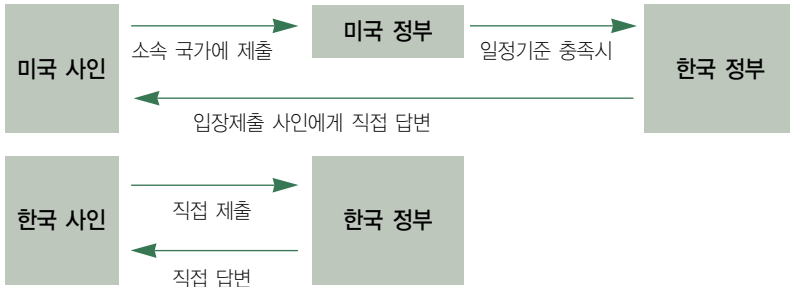
## 대중참여 확대 (제20.7조)

- 환경 챗터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 환경법 및 환경법 집행/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경법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 사인(私人)은 환경 챗터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 및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제출(Submission) 가능
    - ※ 한·미 양국은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서면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 환경 챗터 이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개최

- 환경협의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견해 고려, 대중과의 공개회의(public session) 개최 및 동 공개회의 기록 공표 의무화
    - ※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환경 챗터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 관리로 구성된 환경협의회 설립 및 운영
  - FTA 협정발효 1년후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 환경협의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 모든 이행보고서는 공동위원회 제출시 대중에도 공개
- 단, 상대국 소속 사인의 입장제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하고 과도한 입장제출로 인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대국 사인의 입장제출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양국은 환경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경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서면입장 제출을 위한 통로 마련

구분	우리측	미측
환경관련 법령 및 절차 공개	www.law.go.kr(법제처 법령정보센터) www.me.go.kr(환경부) www.scourt.go.kr(대법원)	www.gpo.gov (미국 법령 공개 홈페이지) www.epa.gov(미국 환경보호청)
서면입장 제출	전담부서(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www.state.gov/e/oes/env/trade/c49687.htm(국무부 홈페이지 내 관련 section)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한 당국 회신	대한민국의 인이 제출한 서면입장과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 제출된 미합중국 인의 서면입장에 대해 60일 이내(추가 90일 연장 가능)에 회신할 것을 규정	제출된 서면입장이 관련 당국자에 의해 검토되고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 frame) 내에 회신될 것이라고 규정
관련 규정	한·미 FTA 환경챗터상의 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규정 (환경부 예규 제442호)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

- 상대국 소속 사인은 소속 당사국을 통해 입장을 제출토록 하고, 소속 당사국은 동 사인이 제출한 입장이 환경 첩터상 특정조항의 이행과 관련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 가능



### 분쟁해결절차 (제20.9조)

-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1차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회합을 요청하도록 하여, 양측간 협의를 통한 협정의 이행을 강조
- 환경법 적용과 집행의무 관련 한·미 양국은 부속서한 교환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이전에 분쟁사안을 규율하는 환경법과 동등한 법이 자국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토록 함으로써, 양국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

## 환경법의 정의 및 범위 (제20.11조)

- 환경 챗터상 환경법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의미함.
  - 단,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은 포함하지 않음.
- 아울러, 환경법은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가능한 환경법으로 제한함.
  - 미국 연방 환경법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환경법이 공통으로 규율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제한함.

## 환경 협력 확대

-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강화를 위해 환경 챗터와 별도로 환경 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 (2012.3.15 발효)

### 참고: 환경협력협정(AEC) 주요 내용

#### ○ 목 적

- 양국의 환경보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추진, 정보 및 인적교류 촉진 등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사업추진 체계

-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환경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

- 협력위원회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협력결과 보고서를 작성 공포
- 한·미 FTA 발효1년 이내 첫 회의를 가지고 이후 합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동
- 협력 사업계획(Action Plan) 수립·집행
-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 제공, 합동포럼에 민간참여 회의 포함 등 민간참여 촉진

### ○ 협력사업 분야

- 인센티브, 시장메커니즘, 민·관 파트너십,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법 및 정책 개발과 이에 대한 이행 준수·집행에 대한 정보교환
- 다자간환경협약(MEA) 이행
- 교육, 정보제공, 민간참여 촉진 등을 통한 공공인식 제고·참여
- 육상, 내륙, 연안,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 불법 벌목 및 부산물의 운송교역 대응/CITES 종의 불법거래 대응
- 오염예방·방지, 유해폐기물 및 유독물 관리, 재활용 등을 통한 대기·수질 오염 저감
- 환경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도 등을 통한 청정생산 기술
- 환경 위해성평가 및 감시능력 제고, 과학에 기반한 환경기준 설정
- 환경법 및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교환
- 해양운행 선박 및 항만과 관련된 환경보호
- 산업 및 자연재해 등 환경 비상사태 대응 및 예방 기법
- 여타 양국이 합의하에 추진하는 사업

### ○ 협력형태(Form of Cooperation)

- 전문가 등 인력 교류 촉진
- 공동 회의 세미나, 워크샵 및 훈련과정 운영
- 공동 연구·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정보교류를 위한 학계·산업계·정부의 연계 촉진
- 양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사업 등